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김지향 의원

나. 의안번호: 제2798호

다. 발의일자: 2025.5.26.

라. 회부일자: 2025.5.29.

2. 제 안 사 유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그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함께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7호).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 지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31조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여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이견 없음.

○ 다만, 당분간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뚜렷한 세입 증가 요인은 없는 반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수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당 규모의 재원 부족[1]이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운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동 조례 제31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회계로부터의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시 예산과에서는 부정적 의견).

또한, 2024년부터는 독립유공자 등 현행 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일반회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임.

---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25년~'29년) 투자수요는 6조 4,383억원에 달하여 1조 3,560억원(연평균 2,712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제시

〈일반회계 보전 대상 감면 현황〉

감면대상	시행시기	보전중단	감면방법 및 감면률
기초생활수급자	'89.05.	'09~	가구당 월사용량의 10m³까지 감면
소방용수시설	'00.08.	'09~	소화전·급수탑 기본요금 감면
장애인이용시설	'88.10.	'09~	납기별 사용량의 20% 감면
독립유공자	'20.01.	'24~	가구당 월사용량의 10m³까지 감면
중증장애인	'22.05.	'24~	가구당 월사용량의 10m³까지 감면

○ 한편,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2]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현행 조례와 달리 감면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법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와 제12조(보상금) 등 주요 보훈 지원제도에서는 수혜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3]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 차원의 공공요금 감면제도에서 '유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상(지침 제3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유족(공무원 유족 제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3)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수는 2,238명,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수는 약 62배 많은 135,876명임.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면 추가 재정 소요는 연간 약 93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하여 산출된 결과로 그 외 유가족까지 확대 적용 시 재정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등록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현황〉

('25년 4월말 기준, 단위: 명)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합계	대상자	선순위 유족	합계	대상자	선순위 유족
2,238	1	2,237	135,876	87,836	48,040

※ 선순위 유족을 제외한 그 외 유족 또는 가족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확인 불가

〈개정조례안에 따른 감면액 변동 분석〉

('25년 4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년)

구분	감면대상자	연간 감면액
현행 (독립유공자)	2,238	156
개정안 (국가유공자)	135,876	9,457
감면액 증감		9,301

※ 감면대상자 중 중복대상(수급자, 장애인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확인 불가로 미포함.

○ 전국 주요 광역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운영 현황을 보면, 부산시(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5급), 세종시(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가족은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며, 대전·광주·인천·제주·울산 등 다수 광역지자체는 감면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다만, 대구시의 경우 군위군에 한하여[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면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음.

4)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23.7.1.시행)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2년간 유예('25년까지 감면 적용) 근거 마련